

예산총칙

2022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577,000,000	47,310,000
일반회계	1,384,300,000	41,529,000
특별회계	192,700,000	5,781,000
공기업특별회계	70,500,000	2,115,000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46,300,000	1,389,000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4,200,000	726,000
기타특별회계	122,200,000	3,666,000
수질개선특별회계	6,283,000	188,49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327,000	99,81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1,259,000	37,770
주택사업특별회계	342,000	10,260
치수사업특별회계	26,559,000	796,770
주차장특별회계	6,678,000	200,340
대지보상특별회계	285,000	8,55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99,000	2,970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76,958,000	2,308,740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10,000	12,3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서"와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 해당사항 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 해당사항 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사"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5,457,477천원으로 한다.
(일반예비비 10,000,000천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5,457,477천원)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51,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